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

<table>
<tr><th>개정 전</th><th>개정 후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

제1조 거래조건

<table>
<tr><td><추가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</td><td>□ 징 구
□ 미징구</td><td>□ 약정한도 미사용금액(즉, 약정한도평잔 -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) × ( )% × 운용기간 ÷ 365 (윤년은 366일, 외화대출은 360)</td></tr>
</table>

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

① <기재 생략>

1.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, AAA 등급 6 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AAA 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,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,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, LIBOR 3개월물,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.

2. <기재 생략>

가. <기재 생략>

나. 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

다. ~ 라. <기재 생략>

② <기재 생략>

<내용 신설>

</td><td>

제1조 거래조건

<table>
<tr><td>한도약정 수수료</td><td>□징 구
□미징구</td><td>□ 여신한도 약정금액 × ( )% × 약정기간 ÷ 365일(윤년은 366일, 외화대출은 360일)</td></tr>
<tr><td>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</td><td>□징 구
□미징구</td><td>□ 약정한도 미사용금액(약정한도평잔 -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) × ( )% × 운용기간 ÷ 365일 (윤년은 366일, 외화대출은 360일)</td></tr>
</table>

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

① <현행과 동일>

1.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, AAA 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(3개월물, 6개월물, 1년물, 3년물, 5년물),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,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, LIBOR 3개월물,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.

2. <현행과 동일>

가. <현행과 동일>

나. <삭제>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

다. ~ 라. <현행과 동일>

② <현행과 동일>

③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은행 내부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경우, 은행이 각 기간별 대표금리로 정한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자금별 특성을 반영한 스프레드 등을 가감하여 정한 내부이전가격(FTP)을 기준금리로 적용하기로 합니다.

④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수신금리로 적용하는 경우,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이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</td><td>

- 내용 추가

- 표기 정정

- 3개월 금융채 추가 및 내규 반영

- 문구 삭제

- FTP 기준금리 내용설명 추가

- 금리연동형 수신상품 담보대출 기준금리 내용설명 추가

</td></tr>
</table>

제3조 중도상환해약금 ~ 제6조 감액·정지 <기재 생략>	**제3조 중도상환해약금 ~ 제6조 감액·정지** <현행과 동일>	
< 내용 신설 >	**제7조 한도약정수수료** ①한도거래 여신을 약정할 때 제 1조에서 정한 한도약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. ②제 1 조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 금액에 대하여 한도증액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남은 일수에 대하여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. ③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및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한도가 변경(감액, 해지, 해제, 정지)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- 여신거래추가약정서 (한도약정수수료 약정용) 내용 삽입
제7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 ~ ② <기재 생략>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. 1.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. 다만,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. 2. <기재 생략> 3. 제 1 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4. <기재 생략>	**제8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** ① ~ ② <현행과 동일>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. 1.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, 약정해지일 및 기한연장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. 다만,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. 2. <현행과 동일> 3. 제 1 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일, 한도 기한연장일 및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4. <현행과 동일>	- 번호 체하 -징구시점 추가
제8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~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<기재 생략>	**제9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~ 제16조 기타 특약사항** <현행과 동일>	- 제8조~제15조 번호 체하

※ 시행일자: 2017.06.12일

※ 기거래 고객에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 미적용